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101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준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19. 7. 21.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같은 업종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3) 피고 B은 F의 실질적 운영자 겸 같은 업종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위 피고는

2017. 9. 12. 구속 후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

4) 피고 D은 같은 업종인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경위

1) 원고는 2017. 5. 29.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원고는 위 송금 이유와 관련하여, F 또는 그 운영자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보관될 냉동 조기(부세)의 보관인수자 명의를 안고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7. 7. 27.부터 2017. 8. 18.까지 F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6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원고, F, 피고 C은 2017. 12.경 원고가 반환을 구하던 250,000,000원 중 이미 반환된 돈이 74,000,000원(= 위 송금 60,000,000원 + 그 밖의 대물변제 14,000,000원) 상당이라고 보고, 원고는 '채권자', F을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다음 각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증인에게 작성을 촉탁하였다.

가) F이 원고에게 '냉동 조기 대금' 명목으로 176,000,000원(= 250,000,000원 - 74,000,000원) 채무를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조건으로 부담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7. 12. 27. 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F이 원고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7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7. 12. 29.자 '차용증'(갑 제5호증)

3) 원고는 2018. 7. 13. F에게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창고에 보관 중이던 10,500,000원 상당 냉동 꽃게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권리관계

피고 D은 2017. 6. 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가액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2017. 6.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불기소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F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자신을 속여 2017. 5.경 냉동 조기 명의변경 대가 250,000,000원을, 2018. 7.경 냉동 꽃게를 각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8. 11. 22. 'F'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B로서 피고 C은 그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 C이 지급 능력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C의 위 혐의 모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형제29708).

2) E은 그 후 다시 피고 C을 같은 혐의로, 피고 B을 피고 C의 2017. 5.경 사기 공범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부산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9. 8. 8. 피고 C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추가 증명자료 없이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의, 피고 B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 B, C이 원고에게 냉동 조기에 관한 보관인수증 명의변경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고소인인 E의 주장뿐이고, 그밖에 피고 B이 E을 변제 의사나 능력,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9형제6894).

[인정 근거]

○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피고 D), 갑 제1부터 10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다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냉동 조기의 보관인수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 C과 함께 이를 속인

채 원고로부터 명의변경 대가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에서 반환된 74,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176,000,000원(= 250,000,000원 - 74,000,000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 이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냉동 조기 관련 청구(선택적 청구)

가) 피고 C은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냉동 조기 대금' 채무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냉동 꽃게 관련 청구

피고 C은 냉동 꽃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인 채 원고로부터 10,500,000원 상당 냉동 꽃게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상당 손해를 입혔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냉동 조기 보관인수자 명의변경 관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2017. 6. 5.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75,000,000원에서 M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5,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 275,000,000원 -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50,000,000원의 가액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자백간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9. 5. 30.(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연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냉동 조기 관련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냉동 조기 대금' 채무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냉동 조기 관련 청구에 관하여,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볼 일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냉동 조기 관련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냉동 꽃게 관련 청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 C에 대한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 및 그 결정 이유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냉동 꽃게를 공급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9. 7. 21.(이자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20. 12. 31.(원금 변제기)까지: 연 5%(약정이율)(이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성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 C에 대한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 및 그 결정 이유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냉동 조기의 보관인수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연대보증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성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7. 6. 5. 이후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7. 12. 27. 발생하였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연대보증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연대보증 채권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1) 주채무 없이 보증채무만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채무의 발생을 당연히 예정하는 주채무 역시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사후에라도 그것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가) 만약 위 보증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인 주채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본다면, 앞서 보았듯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무의 현실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나) 만약 위 보증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인 주채무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정채무로 본다면, 고도의 개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채무의 발생원인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보증채권의 발생원인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각 계약이어서, 원고와 주채무자 F 사이에서는 F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원고와 연대보증인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리라는 객관적인 사정까지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는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냉동 조기 대금' 채무

176,00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액수는 F이 지급받은 250,000,000원 중 원고에게 반환된 74,000,000원을 공제한 값과 같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변경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자인데, '냉동 조기 대금'은 오히려 원고가 이를 지급 받을 채권자로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주채무인 '냉동 조기 대금' 채무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변경 계약에 기한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계약의 존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당사자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명의변경 계약 당사자는 원고, 피고 B, C인 데 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구속된 관계로 그 당사자는 원고, F, 피고 C이다)에 의한 새로운 의사표시로 발생한 별개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효량 판사 김해마루 판사 정예지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아파트 P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1층 486.9㎡

2층부터 15층까지 각 676.93㎡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강서구 N 대 67160.1㎡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

4.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49.63/67160.1 끝.